부산여자대학교	휴학 규정	제정일자	2004. 8. 1
		최종개정일자	2023. 3. 1
		페이지 수	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여자대학교 학칙 제28조에 규정된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휴학의 종류) 휴학은 가사휴학, 질병휴학, 창업휴학, 어학연수휴학, 취업휴학, 육아휴학, 군휴학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7.03.01.><개정2021.02.01.>

제3조(휴학의 구분) 휴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① 가사휴학 : 개인사정, 경제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/3이상 수업 할 수 없는 자의 휴학을 말한다. <개정 2017.03.01>

② 질병휴학 : 질병으로 2/3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병·의원 전문의(한의사 포함)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3.01>

③ 창업휴학 : 창업으로 인하여 2/3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3.01>

④ 어학연수휴학 : 어학연수로 인해 2/3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자의 휴학을 말한다. <개정 2017.03.01>

⑤ 취업휴학 : 학생의 취업으로 인해 2/3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자의 휴학을 말한다. <개정 2017.03.01>

⑥ 육아휴학 : 학생의 육아로 인해 2/3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자의 휴학을 말한다. <신설 2017.03.01.>

⑦ 군휴학 : 군입영,일반휴학 중인 자로서 군복무확인서 또는 군입영통지서를 제출한 자의 휴학을 말한다. <신설 2021.02.01.>

제4조(휴학의 제한) ①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을 할 수 없다. 단,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② 학기개시 후 4주 이후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.<개정 2017.03.01>

③ 휴학에 관한 기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제5조(휴학 횟수) ① 휴학은 1회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5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유급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.

제6조(휴학기간) ① 일반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1회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졸업유급자의 휴학기간은 학점등록을 마치고 6개월로 하며,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 수강하여야 한다.

③ 군입대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
<신설 2021.02.01.>

④ 장기복무자의 군입대 휴학기간은 복무기간에 한하여 군복무확인서에 명기된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<신설 2021.02.01.>

제7조(휴학절차) 휴학을 원하는 자는 먼저 지도교수와 상담을 한 후, 학부형의 의견과 지도교수의 의견이 포함된 [별지 서식 제2호]의 사유서를 첨부한 [별지 서식 제1호]의 휴학원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며, 군휴학의 경우에는 군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 <개정 2018.03.01.><개정2021.02.01.><개정2023.03.01.>

제8조(휴학서류 및 제출시기) ①일반휴학의 휴학은 재학하고 있는 학기의 현금등록 마감일까지 [별지 서식 제1호]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질병휴학과 군휴학의 경우는 이시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7.03.01.>
<개정2021.02.01.>

②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이로부터 15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.
<신설 2021.02.01.>

③ 일반휴학자가 군입영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02.01.><개정 2023.03.01.>

제9조(휴학자의 성적인정) 제8조의 시기 경과 후 기말고사 시행 전에 질병휴학을 한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.

제10조(휴학자의 납입금)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현금등록 마감일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휴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등록을 필한 자가 학기개시 후 4주 이전에 휴학을 하는 경우에 기 납입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한다. <개정 2017.03.01>

부산여자대학교	휴학 규정	제정일자	2004. 8. 1
		최종개정일자	2023. 3. 1
		페이지 수	3

부 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**(개정시행일)** 개정된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**(직제변경에 따른 개정)**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**(개정시행일)** 개정된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5. **(개정시행일)** 개정된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**(직제변경에 따른 개정)**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**(개정시행일)** 개정된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**(직제변경에 따른 개정)**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산여자대학교	휴학 규정	제정일자	2004. 8. 1
		최종개정일자	2023. 3. 1
		페이지 수	4

[별지 서식 제1호] 2018.3.1.개정, 2023.3.1.개정

계	학과장	교무처장

휴 학 원 서

학과(계열/전공) : 과 학년 반 번 (학번 :)

성 명 : (한 자 :)

생년월일 : 년 월 일생

1. 휴 학 사 유 :

2. 휴 학 기 간 : 년 월 일부터

년 월 일까지

위와 같이 휴학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본 인 : (인)

보호자주소 :

보호자성명 : (인)

부 산 여 자 대 학 교 총 장 귀 하

부산여자대학교	휴학 규정	제정일자	2004. 8. 1
		최종개정일자	2023. 3. 1
		페이지 수	5

[별지 서식 제2호] 2015.8.31개정

사 유 서

학과(계열/전공) :

학 번 :

성 명 :

학 생 사 유
학부형의견
지도교수의견
지도교수 : (인)

년 월 일

본 인 : (인)

보 호 자 : (인)

부산여자대학교총장 귀하